



제40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령의 계산 및 표시방식 규정〉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29호)

2022.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심정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3. 관계기관의 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상범의원 등 34명
2. 제 안 일 : 2022. 5. 17.
3. 회 부 일 : 2022. 5.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관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절 <u>기간의 계산</u> <u><신 설></u>	제2절 <u>기간 및 나이의 계산</u>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滿)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나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年齡)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출생일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는 무관하게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함.

이와 달리 연령을 계산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만 나이”가 있는데, 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하여 1년(365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연령 계산 및 표시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식임.

또 다른 방식으로는,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하는 “연 나이”가 있는데, 이 방법은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법 중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¹⁾ 및 「병역법」(제2조)²⁾, 「민방위기본법」(제18조)³⁾ 등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이하 각 호 생략)

나이 계산의 한 예로 1995년 9월 10일생은 현재 2022년 9월 8일이라고 할 때 세는 나이로는 28세, 만 나이로는 26세, 연 나이로는 27세가 되는데,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방식과 공식적인 법률 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각각 달라 대국민 정책 수행과정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나이 계산의 예시(1995.9.10.생)】

연도		2022년		2023년	
기준일		2022년9월10일 이전	2022년9월10일 이후	2023년9월10일 이전	2023년9월10일 이후
연령 (세)	세는 나이	28	28	29	29
	만나이	26	27	27	28
	연나이	27	27	28	28

이처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자는 논의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음⁵⁾.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민사분야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각각 ‘만 나이’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

4) 연령 계산 및 표시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6월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948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임.

5) 연합뉴스, “내년엔 나이 한두살 줄어들까...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종합)”, 2022.4.11.

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민법」과의 관계 등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법」 제155조⁶⁾는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⁷⁾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령의 계산과 표시에 관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입법의 실익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련하여 「민법」을 개정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침익적 사안과 관련되어 「민법」상 기간 계산 적용의 예외가 나이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이의 표시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7)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현행	개정안	전문위원 수정의견
제2절 <u>기간의 계산</u>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u>기간의 계산</u>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u>기간</u>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신설>	제2절 <u>기간 및 나이의 계산</u>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滿)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u>기간</u>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 및 나이) ① ----- <u>기간의 계산 및 나이의 표시</u>----- -----. ② ----- ----- <u>기간(나이는 제외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계부처 의견

법원행정처는 나이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임. 다만,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의 경우에도 민법의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출생일 산입 여부는 햇수를 세는 만 나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로 보이므로 만 나이 사용을 위해서는 “연령은 만 나이로 표시한다” 정도의 선언 규정만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민법」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상 행정분야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같더라도 「민법」 준용 방식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민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행정기본법」에 그 내용을 풀어서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4

【참고자료】 연령 계산 관련 법적 분쟁 및 국민 불편 사례

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사례)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분쟁이 장기 계속)

노사 단체협약상 “56세”의 의미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만 56세”라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②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사례)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 이해 혼선

-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발생 →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분쟁 발생 소지 사전 차단

“26세 이상” 연령한정 운전특약상 나이 계산법을 ‘세는 나이’로 생각하고 계약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특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③ (방역 관련 혼선 사례)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대상 관련 현장 혼선

-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예약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의 해석과 관련
 - 접종 현장 병원에서는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 발생
-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기준 안내 관련 민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 증가

④ (행정 현장 혼선 사례) 일선 행정에서의 나이 계산법 관련 민원 발생

- (평택시) 나이 계산법 혼선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나이 계산법 일원화(‘만 나이’로 통일) 건의

⑤ 그 밖의 불편 사례

-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로 기재된 경우
 - 의약품의 섭취량·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만 나이’ 기준)한데, 나이 계산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혼선(‘만 나이’, ‘세는 나이’)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 ‘세는 나이’의 단점·불편에 따른 ‘만 나이’ 통일 요청 국민청원 다수(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200개 이상)